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0년 월 일 (제 382 회)

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
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제 안 자	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6월 9일

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0. 6. 9.

제안자 :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
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

1. 주문

-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-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호축 개발의 중심으로 지난해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추진 중임
- 그러나, 호남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하는 핵심인 오송연결선 사업이 안전성 우려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기재부 재정사업심의에서 제외되어 강호축 개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, 세종시의 KTX세종역·I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 대응이 필요함
- 특별위원회 활동을 2020년 6월 30일에 종료할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지원과 KTX오송역 활성화 및 KTX세종역 설치 저지 등 특별위원회의 당초 구성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
- 따라서,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
관계법령 발췌

□ 특별위원회 구성

[지방자치법]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[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8조(특별위원회)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